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56호 2018. 8. 22.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884호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18-888호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884호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문을 정비하여 정선군보증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

나.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안 제6조)

- 채권자에게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군수가 관리하도록 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560-2229
- 팩스: 033-560-2592
- 이메일: blind7@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제2조에 따라”로, “군이 보증”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를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군수에 게”를 “군수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채무의”를 “채무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교부되었”을 “발급되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변경 코자”를 “변경하고자”로, “제2조 내지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

제7조제1항 중 “변제기간내”를 “변제 기간 내”로,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얻어”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정 선 군 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정선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정선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 사항

4.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주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선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정 선 군 수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응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정 선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조사 관리할 때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 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고서류	3. 그 밖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	②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현행	개정안
<u>야 한다.</u>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u>제3조의 규정</u>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u>군수에</u>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u>제2항의 규정</u>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u>사전에</u>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가능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군수는 <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u>제3조의 규정</u>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u>교부한다</u>.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u>제3항의 규정</u>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u>교부되었을 때</u>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채권자	<u>한다.</u>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 <u>제3조에 따른</u> ----- ----- ----- ----- <u>군수에게</u> ----- ----- . ----- <u>제2항에 따라</u> ----- ----- <u>붙여야</u> -----. ②----- ----- <u>미리</u> ----- ----- <u>채무의</u> ----- ----- . <u>다</u> <u>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u> ----- ----- <u>제3조에 따</u> <u>른</u> ----- ----- - <u>발급한다</u>. ④----- <u>제</u> <u>3항에 따른</u> ----- <u>발</u> <u>급</u>-----.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①-----

현행	개정안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u>변경코자</u>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u>변경하고자</u> ----- <u>제2조부터 제4조까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u>변제기간내</u> 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u>경우</u> 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u>변제 기간 내</u> ----- ----- <u>경우에</u> ----- ----- ----- --.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u>지방의회 회의 의결을 얻어</u>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②---- <u>제1항에 따라</u> ----- ----- ----- <u>군의회의회의 의결을 받아</u> -----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u>필요</u>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8-888호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사례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28조, 제29조)
 -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추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삭제
 - 보조금의 교부 제한은 군수 재량사항으로 ‘제할할 수 있다’로 개정
- 나. 규제개선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안 제21조, 제26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교부 제한 규정 삭제
 - 불명확한 사유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560-2239
- 팩스: 033-560-2592
- 이메일: jeonyp@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공립학교”를 “국공립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신청자를”을 “신청자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 경우에는”을 “받은 경우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명”을 각각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명령”을 “처분”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한하여</u>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4조(보조대상 사업) ----- ----- ----- ----- <u>한정하여</u> ----- ----- -----.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해마다 <u>안</u> <u>전행정부장관이</u>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안전부장관</u> ----- -----.
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u>국·공립학교</u> 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제6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공립학교</u> ----- ----- -----

의미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1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제9조(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
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

-----.

<단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갖추어 두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
-----.

제11조(의견청취 등) -----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4조(보조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 9. (생략)

제16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

듣거-----
-----.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없을 때에는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신청자가 -----

2. ~ 9.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

----- 않는 -----

-----.

③ -----

----- 하지 않는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다. -----
----- 받은 경우는 -----
-----.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략)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

----- 아니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 처분-----
-.

④ -----

----- 처분-----.

⑤ (현행과 같음)

⑥ -----

----- 처분----- 않는 -----

----- 않은 -----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아니 된다.

----- 않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 제한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